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892호
2024년 4월 4일
목요일

공 고			
○ 공 고	제 6 9 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3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도 시 재 생 과 2
○ 공 고	제 6 9 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2-1호선 외 2개 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도 시 재 생 과 10
○ 공 고	제 7 0 1 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교 통 행 정 과 16
○ 공 고	제 7 0 3 호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안 전 총 괄 과 19
○ 공 고	제 7 0 4 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29
○ 공 고	제 7 0 8 호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기 획 예 산 과 31
○ 공 고	제 7 1 0 호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안 전 총 괄 과 160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 1 3 호	「남동구의회 회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74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 1 4 호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82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 1 5 호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88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 1 6 호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98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 1 7 호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07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6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3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3호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로과(☎453-2723), 도시재생과(☎453-2954)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4.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99-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수현지구 소3-3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B=6.0m, L=231.0m, A=1,757.0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도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로과 032-453-2723, 도시재생과 032-453-2954,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1. 편입용지조서

용 지 조 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연면적 (㎡)	지 번	지 목	지 적 면 (㎡)	편 입 면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369-10	대	32	32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심정동 ***-*				
2	369-5	도	17	17	홍*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	이*희	강서구 화곡동 ***-*	근저당권자	
3	369-1	대	321	46	신*숙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41번길 ** ***동***호				
4	369-3	도	74	74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5	368	대	382	8	오*일 외15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6	368-10	대	6	6	오*일 외3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7	369-7	대	29	29	오*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장수동)				
8	369-6	대	166	15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9	751-2	도	367	20	국	건설부				
10	372-4	도	5	3	장*귀 외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 ***호	주식회사 **은행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길 **	근저당권자	
11	371	대	499	109	윤*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 비동 ***호	주식회사 **은행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길 **	근저당권자	
12	370	대	684	111	김*중 외3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정송길 ***-*	**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	근저당권자	
13	366-3	대	300	153	김*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14	365-1	전	403	46	국	국방부				
15	366-2	대	286	4	이*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 ***동 ***호	주식회사 **은행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길 **	근저당권자	

용 지 조 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연면적	지 번	지 목	지 면 적 (㎡)	편 입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6	366-5	대	415	85	유*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17	366-1	대	345	84	유*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18	361-2	대	492	43	국	기획재정부				
19	360-2	도	96	96	국	기획재정부				
20	360-3	대	344	144	국	기획재정부				
21	361-1	대	678	10	최*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22	360-1	대	10	10	국	기획재정부				
23	751	도	1,491	68	국	건설부				
24	359-1	대	6	6	오*선 외1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번길 **, ****동 ***호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25	358-4	대	33	5	국	재무부				
26	358-3	대	81	22	오*선 외1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번길 **, ****동 ***호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27	358-2	대	730	165	차*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28	357-8	전	307	48	차*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29	357-11	전	1,010	65	최*락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30	357-5	도	169	169	국	기획재정부				

용 지 조 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연도 연월일	지 번	지 목	지 적 면 (㎡)	편 입 면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31	357-7	전	2	2	국	기획재정부				
32	357-6	대	122	9	이*애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동***호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권자	
33	355-3	전	106	1	국	국방부				
34	369-2	대	285	6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35	369	대	299	3	오*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마을 ***-***				
36	366-7	대	5	4	이*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 ***동 ***호	주식회사 **은행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길 **	근저당권자	
37	359	대	373	4	옹*선 외1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74번길 **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38	751-26	대	52	2	국	기획재정부				
39	358-1	대	182	9	한*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40	357-10	전	896	21	정*기 외3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 *-***				
41	357-1	전	218	1	한*우 외3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4번길 *, ***				
42	357-4	전	73	2	조*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4번길 **				
계			12,391	1,757						

2. 한전주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구조 및 규격	단 위	수 량	소 관 청	비 고
1	남동구 장수동	366-3	수현지38L4R9	EA	1	한국전력공사	
2	남동구 장수동	361-2	수현지38L4R8	EA	1	한국전력공사	
3	남동구 장수동	361-2	수현지38L4R7	EA	1	한국전력공사	
4	남동구 장수동	360-1	수현지38L4R6R1	EA	1	한국전력공사	
5	남동구 장수동	358-4	수현지38L4R6	EA	1	한국전력공사	
6	남동구 장수동	357-8	수현지38L4R6R1	EA	1	한국전력공사	
7	남동구 장수동	357-11	수현지38L4R6R2	EA	1	한국전력공사	
8	남동구 장수동	357-11	수현지38L4R5	EA	1	한국전력공사	

3. 체신주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구조 및 규격	단 위	수 량	소 관 청	비 고
1	남동구 장수동	366-3		EA	1		
2	남동구 장수동	361-2		EA	1		
3	남동구 장수동	358-2		EA	1		
4	남동구 장수동	358-2		EA	1		
5	남동구 장수동	357-5		EA	1		
6	남동구 장수동	357-11		EA	1		

4.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남동구 장수동	369-1	컨테이너	6.0m X 3.0m	EA	1	신*숙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번길 **, ***동 ***호	
2	남동구 장수동	369-10	돌 쌓기	H=0.5m	m2	3.4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3	남동구 장수동	370	문주		m2	0.6	김*중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정송길 ***-	
4	남동구 장수동	371	화단		m2	30	윤*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 *동 ***호	
5	남동구 장수동	366-5	발		m2	71	유*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6	남동구 장수동	366-1	발		m2	29.5	유*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7	남동구 장수동	751	헨스	H=2.0m	m	12	국	건설부	
8	남동구 장수동	358-3	헨스	H=2.0m	m	2	오*선	연수구 컨벤시아대로***번길 **, ****동 ***호	
9	남동구 장수동	369-1	건물		m2	11.2	신*숙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번길 **, ***동 ***호	
10	남동구 장수동	369-1	건물		m2	47.3	신*숙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번길 **, ***동 ***호	
11	남동구 장수동	366-3	건물		m2	151.7	최*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12	남동구 장수동	365-1	건물		m2	115.6	국	국방부	
13	남동구 장수동	361-2	건물		m2	84.2	국	기획재정부	
14	남동구 장수동	357-5	건물		m2	36.8	국	기획재정부	
15	남동구 장수동	357-11	건물		m2	41.8	최*락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16	남동구 장수동	357-6	건물		m2	15.7	이*애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동 ***호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69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2-1호선 외 2개 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2-1호선 외 2개 노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로과(☎453-2723), 도시재생과(☎453-2954)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4.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9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수현지구 소2-1호선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면적: 1,453.0m²
- 소로2-1호선: B=8.0m, L=140.0m, A=1,279.0m²
- 소로3-5호선: B=6.0m, L=165.7m, A=30.0m²
- 중로1-10호선: B=20.0~25.0m, L=1,380.0m(354), A=144.0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도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로과 032-453-2723, 도시재생과 032-453-2954,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1. 편입용지조서

용 지 조 서 (소로2-1호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연번	지 번	지목	지 면 적 (㎡)	편 입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751	도	1,491	196	국	건설부				
2	355-3	전	106	54	국	국방부				
3	355-2	도	245	84	국	국방부				
4	356-3	답	350	53	차*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5	356-2	도	254	254	오*섭	인천시 중구 경동 **				
6	356-4	도	40	40	차*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7	751-24	도	199	24	국	건설부				
8	399-2	도	416	416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9	398-7	전	1,617	55	장*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번길 *, *층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	근저당권자	
10	398-2	도	41	37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11	394-8	전	4	4	오*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12	356-5	답	104	6	민*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길 **, ***동 ****호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13	356-1	과	739	1	민*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길 **, ***동 ****호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14	399-1	답	922	26	오*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15	399-4	전	942	29	송*만 외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자	
계			7,470	1,279						

용 지 조 서 (중로1-10호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지번번호	지 번	지 목	지 면 적 (㎡)	편 입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398-7	전	1,617	26	장*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번길 *, *층				
2	398-2	도	41	4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3	397-1	전	332	39	장*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번길 *, *층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	근저당권자	
4	397-3	도	133	26	공	인천광역시				
5	397-10	도	1,055	49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			3,178	144						

용 지 조 서 (소로3-5호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지번번호	지 번	지 목	지 면 적 (㎡)	편 입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397-3	도	133	5	공	인천광역시				
2	397-10	도	1,055	25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			1,188	30						

2. 한전주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구조 및 규격	단 위	수 량	소 관 청	비 고
1	남동구 장수동	356-2	수현지38L4R3	EA	1	한국전력공사	
2	남동구 장수동	399-2	수현지38L4R2	EA	1	한국전력공사	
3	남동구 장수동	399-2	수현지38L4R1	EA	1	한국전력공사	

3. 체신주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구조 및 규격	단 위	수 량	소 관 청	비 고
1	남동구 장수동	356-2		EA	1		
2	남동구 장수동	356-2		EA	1		
3	남동구 장수동	356-2		EA	1		
4	남동구 장수동	399-2		EA	1		

4. 지장물 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 위	수 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남동구 장수동	366-2	안내판		EA	1	오*섭	인천시 중구 경동 **	
2	남동구 장수동	356-2	헨스	H=1.8m	m	3	오*섭	인천시 중구 경동 **	
3	남동구 장수동	751-24	안내판		EA	1	국	건설부	
4	남동구 장수동	399-2	헨스	H=0.8m	m	10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5	남동구 장수동	399-2	헨스	H=0.8m	m	2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6	남동구 장수동	399-2	돌 쌓기		m2	6.6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7	남동구 장수동	751	간판		EA	1	국	건설부	
8	남동구 장수동	751	헨스	H=1.5m	m	2	국	건설부	
9	남동구 장수동	751	간판		EA	1	국	건설부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701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남동구의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앞서 행정 예고한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카메라(CCTV) 1개소의 설치 위치 변경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3.

남 동 구 청 장

- 가. 단속목적 : 원활한 교통소통 및 효율적인 불법주정차단속
나. 주요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 위치 변경
다. 설치장소

연 번	관할동	상세주소	비고
변경 전	서창2동	서창동 749	
변경 후	서창2동	서창동 750	

※ 상세위치도 [붙임] 참조

- 라. 예고기간 : 2024. 4. 3.(수) ~ 2024. 4. 23.(화) (공고일로부터 20일)
마. 제출방법
- 직접방문, 공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2-453-2899)
- **팩스의 경우 전송 직후 전화로 접수 확인 필수**
바.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사. 제출기한 : 2024년 4월 23일 (화)
아. 문의사항 :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032-453-2897)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703호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화재피해 주민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구 수정 및 일부 용어 정비 : (안 제8조제1항, 제2항)
-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 : (안 제8조제2항)
- 조항 신설 : (안 제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요망)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안전총괄과 / ☎ 453-2334, FAX 453-231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참고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 및 제2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5호,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10조제1항 및 제3항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제2조 및 제3조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
-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1조, 제63조제1항제1호, 제67조제6항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화재피해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조문을 개정,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구 수정 및 일부 용어 정비 : (안 제8조제1항, 제2항)
-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 : (안 제8조제2항)
- 조항 신설 : (안 제8조제4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 및 제2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5호,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10조제1항 및 제3항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
-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1조, 제63조제1항제1호, 제67조제6항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임시거주”를 “거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최대 5일”을 “30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화재피해 상황”을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재 상황 등”으로, “5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을 “최대 60일까지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시거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임시거처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u>임시거주</u> 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임시거처 지원) ① ----- ----- --- <u>거주</u> ----- ----- -----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u>최대 5일</u> 로 한다. 다만, <u>화재피해 상황</u> 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u>5일 이내에서 추가</u> 지원할 수 있다.	② ----- ----- <u>30일</u> -----. <u>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재 상황 등</u> ----- ---- <u>최대 60일까지 연장</u> ---- -----.
③ (생략) <u><신 설></u>	③ (현행과 같음) ④ <u>임시거처 제공에 따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u>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3개월 간, 같은 호 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호 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네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1조(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법 제60조제2항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3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조에서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제6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704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처 분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4. ~ 2024. 4. 19.
3. 공고대상 : 172하3540 외 4대 (별첨)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 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1)

2024. 4. 4.

남 동 구 청 장



운행정지 자동차 현황(2024년 3월분 2차)

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등록일	등록사유
1	172하3540	투싼(TUCSON)	신**	2024.03.28	소유자 요청
2	인천32라9328	갤로퍼Ⅱ	정**	2024.03.26	소유자 요청
3	183로2094	SM6	최**	2024.03.26	소유자 요청
4	06버3722	BMW 530i xDrive	김**	2024.03.21	소유자 요청
5	145호4730	SM6	신**	2024.03.20	소유자 요청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708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 무 과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복지과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육정책과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책과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공원녹지과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식품위생과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간식건강생활 지 원 센 터

2024년 4월 4일

남 동 구 청 장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4. 4. 16.(화) ~ 4. 23.(화)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남 동 구

목 차

【 총 무 위 원 회 】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전총괄과)
-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

【 사 외 도 시 위 원 회 】

-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복지과)
-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육정책과)
-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책과)
-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공원녹지과)
-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식품위생과)
-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 총 무 위 원 회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14
----------	------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2024.5.17. 일괄 시행)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문화재→국가유산)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법규 중 ‘문화재’ 용어가 사용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문화재’ 등 용어 정비 :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 명칭변경 기준안 상세(문화재청)
-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체제 10개 법률 현황

남동구 조례 제 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남동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동문화원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관리”로 한다.

제3조(「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동구 소래역
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5조(「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문화재에 대한 감면)”을“(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6조(「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1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정보통신사고	정보통신과
국방부	1.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행정안전부	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뭍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안전총괄과, 관련부서 도로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농축수산과
문화체육관광부	1.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농축수산과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사고 2. 원유 수급 사고 3. 전력 사고 4.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생활경제과 〃 기업지원과 〃
보건복지부	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	보건행정과
환경부	1.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환경보전과

고용노동부	1.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안전총괄과, 기업지원과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도로터널 사고 3. 육상화물운송 사고 4. 지하철 사고 5.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도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국가유산청	1.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공원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지 2]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9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쉼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국가유산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환경조형물
 -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 다. 벽화
 - 라. 슈퍼그래픽
 -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쉼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② (생략)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13. (생략)	12.·13. (현행과 같음)

제2조(「남동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6조(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의 위탁) 구청장은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 및 연구, 구민문화교육, <u>문화재관리</u>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	제16조(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의 위탁) ----- ----- ----- ----- <u>국가유산관리</u> ----- ----- ----- -----

업을 문화원에 위탁하여 대행하 게 할 수 있다.	----- -----.
-------------------------------	-----------------

제3조(「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업무 및 기능)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2. (생략) 3. 향토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향토에 관한 교육 4. 5. (생략)	제4조(업무 및 기능) ----- -----. 1. 2. (현행과 같음) 3. <u>향토문화유산</u> ----- ----- 4. 5. (현행과 같음)
제12조(구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역사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 전통문화 및 역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문화예술계, <u>문화재</u> 전문 인사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⑥ (생략)	제1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국가유산</u>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유물평가위원회) ① (생략) ②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은 제12	제18조(유물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유 물·자료 감정에 조예가 있는 위원 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 회의 위원이 아닌 <u>문화재</u> 전문 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③·④ (생략)	----- ----- ----- ----- <u>국가유산</u> ---- -----.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5조(「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u>문화재에 대한 감면</u>) 「 <u>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u> 」에 따라 <u>문화재로</u>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3조(<u>국가유산에 대한 감면</u>) 「 <u>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u> 」----- ---- <u>국가유산으로</u> ----- ----- ----- ----- -----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단순한 자구수정으로 소요 비용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남 기 동

[참고자료]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명칭변경 기준안 상세(문화재청)

-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 or 2개 이상의 유형(문화·무형·자연) 유산을 통칭할 때 ⇒ ‘국가유산’ 용어 사용

현행	변경
문화재	국가유산 (KOREAN HERITAGE)

- (법적용어 사용) 문화·무형·자연 3개 유산법 및 개별법에 따른 법적용어 사용

현행	변경		비고
	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 개별법 등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천연기념물·명승(자연유산법)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법)	-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정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시도자연유산(자연유산법) 시도무형유산(무형유산법)	-
국가등록문화재	국가등록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
시도등록문화재	시도등록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
매장문화재	매장유산	매장유산(매장법)	-
한국문화재재단	국가유산진흥원	-	-
동산문화재	-	동산문화유산(문화유산법, 수리법)	-
유형문화재	-	유형문화유산(문화유산법)	-
민속문화재	-	민속문화유산(문화유산법)	-
국보,보물,사적	-	유지(문화유산법)	-
천연기념물,명승	-	유지(자연유산법)	-
인간문화재	-	삭제(무형유산법)	-
문화재감정위원	-	문화유산감정위원(문화유산법)	-
국외소재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국외소재문화유산(문화유산법)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문화유산법)	-
문화재위원회	-	문화유산위원회(문화유산법)	-
무형문화재위원회	-	무형유산위원회(무형유산법)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수리법)	-
시도문화재 수리기술위원회	-	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수리법)	-

○ (예외적 표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용어가 없거나 법률상 표현에 한계가 있는 경우 ⇒ 문맥·표현의 필요 등에 따라 병행사용 가능

현행	변경		
	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 개별법 등	병행사용 가능
지정문화재	-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지정(국가/자연/무형)유산
비지정문화재	-	비지정국가유산(기금법)	비지정유산
임시지정문화재	-	임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명승(자연유산법)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무형유산법)	임시지정(국가)유산
등록문화재	-	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등록(국가)유산
국유문화재	-	국유문화유산(문화유산법)	국유(국가)유산
시도문화재	-	시도유산(수리법)	시도(국가)유산
문화재돌봄사업	-	문화유산돌봄사업(문화유산법)	
문화재방재의날	-	문화유산방재의날(문화유산법)	

○ (시도유산 명칭 권고) 시도조례에 따른 시도(지정)유산의 명칭변경 권고안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시도지정	○○ 유형문화재	○○ 유형문화유산	
	○○ 기념물	○○ 기념물	
		○○ 자연유산	
	○○ 민속문화재	○○ 민속문화유산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 문화재자료	○○ 문화유산자료	
기초단체 지정	○○ 향토문화재	○○ 향토(문화·자연·무형)유산	지자체 특성에 맞게 '유산' 또는 세부유형별 명칭 사용 권고
	○○ 향토문화유산		
	○○ 보호문화유산	○○ 보호(문화·자연·무형)유산	

□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체제 10개 법률 현황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4.5.17 시행)

구분	법률명	주요 사항
1	국가유산기본법(제정)	국가유산의 정의와 분류, 기본이념 및 보호 원칙,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사항 등을 제시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후속 제·개정 10개 법률 현황('24.5.17 시행)

구분	법률명	주요 사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문화재보호법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문화재를 유형적 문화유산으로 한정하여 변경
2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의 무형문화재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변경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기존의 매장문화재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변경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의 문화재수리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 등으로 변경
5	국가유산보호기금법(개정) * 기존 : 문화재보호기금법	기존의 문화재보호기금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
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
8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개정)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
9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문화재 등을 문화유산으로 변경
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개정)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으로 변경

※ 참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23.3.21. 시행 '24.3.22.)

○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024.1.25.), 2월 중 공포 예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15
----------	------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2023.6.27.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법규 중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인용조문 정비 :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 그 밖에 띄어쓰기 오류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개정)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를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로 한다.

제2조(「남동구 공인 조례」의 개정)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조례
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16조 중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동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정책실명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1.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조(「남동구 공인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남동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 ----- ----- -----.

제16조(준용규정)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 행규칙을 따른다.	제16조(준용규정) ----- ----- -----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 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
--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단순한 자구수정으로 소요 비용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남 기 동

[참고자료]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16
----------	------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3. 4. 27.)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제정에 따라 목적 조항 개정 : (안 제1조)
- 지원 범위의 구체화를 위한 조항 개정 : (안 제4조)
- 지원의 명확화를 위한 지원 절차 신설 : (안 제5조)
- 경찰서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조항 개정 :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참고자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제14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

하는 활동

제4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경비 지원에 필요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구청장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수행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정책기획국 안전총괄과장 김 정 훈

[참고자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회·연합회·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군·구에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수4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의안
번호

2917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만수4동 인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목적

-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 지속적인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거점 마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만수4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
- 위 치 : 만수동 52, 53-7, 53-8, 85, 85-1번지
-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
- 사업규모 : 주차장 3개소 조성
 - 만수동 52번지 : 238.6㎡, 약 8대
 - 만수동 53-7, 53-8번지 : 339.1㎡, 약 9대
 - 만수동 85, 85-1번지 : 342㎡, 약 13대

□ 추진계획

- 2024. 3월 ~ 6월 :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 2024. 7월 : 공사 착공
- 2024. 12월 : 공사 준공

공유재산 (매입) 관리조서

□ 사업명 : 만수4동 원도심 자충주가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 [부사업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남동구 만수동 52번지 외 4필지					
토	지	지	목	면 적 (m ²)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대장가격(천원)
		대		919.7	순복음영광교회 외 5인	2024. 4월(예정)	
건	물	연 면 적					
		구 조					
토지매입비		2,765,000,000원(탁상감정가)					
공사비		582,700,000원					
사업기간		2024. 3월 ~ 12월					

[위 치 도]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현황)

[남동구]

[단위 : m², 천원]

구분	사 업 명	소재지	건수	면 적	공사지가	예정가격	사유	비고
합 계								
기 본 계 획	만수4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	만수동 52번지 외4필지	1	919.7	-	2,765,000	기반 시설 확충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기관명 : 남동구

회계명 : 일반·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m ²)	금 액	건수	수량(m ²)	금 액	건수	수량(m ²)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5	919.7	2,765,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5	919.7	2,765,000				5	919.7	2,765,00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취 득 수 량 (m ²)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소관부서)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량(m ²)						
1	대	만수동 52	238.6	238.6	847,000	2024. 4월	주차장 조성예정	남동구 (도시재생과)	
2	대	만수동 53-7	169.6	169.6	458,500	2024. 4월	주차장 조성예정	남동구 (도시재생과)	
3	대	만수동 53-8	169.5	169.5	457,500	2024. 4월	주차장 조성예정	남동구 (도시재생과)	
4	대	만수동 85	171.9	171.9	518,000	2024. 4월	주차장 조성예정	남동구 (도시재생과)	
5	대	만수동 85-1	170.1	170.1	484,000	2024. 4월	주차장 조성예정	남동구 (도시재생과)	

【 사 외 도 시 위 원 회 】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18
----------	------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참전명예수당의 인천시 군·구간 수당 격차 해소 필요성 대두와 국가보훈부의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이행 협조 요청 등에 따라 수당 관련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당 지원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인상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2024년 참전명예수당 군·구별 지급 현황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2105(2023.10.12.)호]
: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이행 협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8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65세 이상의 법률상 배우자(이하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 한다)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하 “배우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① ----- ----- ----- ----- ----- ----- ----- ----- ----. ----- ----- ----- ----- ----- ----- ----- ----- -----.
1.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이내 <단서 신설>	1. ----- --. 다만, <u>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인상

나. 관련 조문

-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참전유공자 1,968명(2024년 내시 인원 반영)을 대상으로 2024년 7월부터 월 3만원의 수당 인상 (구비)

나. 추계 결과

- 총 2,756,160천원 추가 소요 예정 (2024년~2028년)

※ 2024년: 30,000원*1,968명*6월 = 354,240,000원

※ 참전유공자의 고령화 및 타 시군구로의 전출 등에 따라 수당 지원 대상자는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

	2021	2022	2023
연간 감소 인원수	142명 (2,423명→2,281명)	142명 (2,261명→2,119명)	108명 (2,105명→1,997명)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100% (2,756,160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김 경 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354,240	665,280	622,080	578,880	535,680	2,756,16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 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354,240	665,280	622,080	578,880	535,680	2,756,160
	지방세		354,240	665,280	622,080	578,880	2,756,16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2024년 참전명예수당 군·구별 지급 현황 (인천광역시)

구분	남동구, 중구, 연수구, 부평구, 미추홀구 (월남전참전유공자)	미추홀구 (625참전유공자), 서구 (월남전참전유공자)	강화군, 동구, 계양구, 서구(625참전유공자)	옹진군	강화군 (봉사활동 참여자)
지원액	5만원	8만원	10만원	12만원	20만원

□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이행 협조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2105(2023.10.12.)호]

(공문)

2.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금액과 지급기준에 차이가 있어 참전유공자, 국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3. 이에 작년 12월, 243개 지자체 대상으로 ‘지급액 하위 40% 지자체는 전국평균 수준으로 인상해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나 그 이행 실적이 저조하여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재차 배포하오니 ‘24년 말까지 기초단체 지급액을 8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① 지급액 관련

- ‘24년 말까지 지급액이 ‘기초단체 하위 80%의 평균 지급액(8만원)’에 못 미치는 기초단체는 해당 금액까지 인상
- ※ 단, 기초단체 지급액이 8만원 미만이라도 광역단체와의 지급액 합계가 18만원을 넘는 기초단체는 1단계 인상 권고 대상에서 제외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19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사결정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위탁 운영
- 위탁시설

센 터 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종사자	개소일
(가칭)간석1동 아이함께자람터 (남동구 8호점)	간석동 353-4번지 (간석1동 복합청사 3층)	98㎡	29명	3명	2024.11월 (예정)

○ 위치도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24.11.1.~'29.10.31. 예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운영 및 관리 전반
- 소요예산 : 642,885천원

□ 동의사항 :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동의내용 : 민간위탁 결정

□ 참고 자료

- 붙임1 :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 붙임2 :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문(안) 1부
- 붙임3 : 관련법령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보건복지부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인천광역시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 비용추계의 기간 : 2024년 11월 ~ 2029년
- 비용추계의 범위 :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운영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4년 ~ 2029년(5년)
- 발생비용 : 642,885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인건비 및 운영비 : 국비50%, 시비25%, 구비25%
-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 시비50%, 구비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복지국 아동복지과장 김 종 수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6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13,596	82,627	83,695	84,778	85,877	87,009	437,582
국비보조금		7,018	42,650	43,200	43,758	44,324	44,899	225,849
시비보조금		6,578	39,977	40,495	41,020	41,553	42,110	211,733
세 출		19,990	121,456	122,991	124,549	126,131	127,768	642,885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19,990	121,456	122,991	124,549	126,131	127,768	642,885
채원 조달		19,990	121,456	122,991	124,549	126,131	127,768	642,885
의존 재원	소 계	13,596	82,627	83,695	84,778	85,877	87,009	437,582
	보조금	국비	7,018	42,650	43,200	43,758	44,324	225,849
		시비	6,578	39,977	40,495	41,020	41,553	211,733
	지방교부세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자체 수입	소 계	6,394	38,829	39,296	39,771	40,254	40,759	205,303
	구 비	6,394	38,829	39,296	39,771	40,254	40,759	205,303
지 방 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인건비(종사자 호봉승급)는 연간 인상률(1.5%) 적용 추산
- 운영비는 2024년도 지원기준 반영

비용 세부 추계표(2024년 센터 운영비 기준)

사업내용	산출내역	대상 및 내용	소요예산 (천원)
계	인건비(종사자 3명), 운영비		119,940
종사자 인건비	[인건비] 73,272천원 -센터장 : 3,166천원×1명×12월 = 37,992천원 -시간제돌봄교사 : 1,470천원×2명×12월= 35,280천원 [제수당] 29,636천원 -임금보전수당 27,476천원 -정액급식비 80천원×1명×12월=960천원 -관리자수당 100천원×1명×12월=1,200천원 [복리후생비] 500천원 -복지포인트 150천원×1명×2회=300천원 -건강검진비 200천원×1명×1회=200천원	- 센터장 1명 - 시간제돌봄교사 2명	103,408
운영비	[운영비] 15,600천원 -1,300천원×12월=15,600천원 [학습환경지원] 932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프로그램비, 학습환경지원 등	16,532

[참고자료1]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II 추진방향

- 공개경쟁 참여기회 확대로 양질의 위탁운영자 선정
-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운영체 선정
-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III 추진경과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논의를 위한 「간석1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 협의(⇔ 도시재생과) : 2021. 3월
-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 및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 확정 : 2021. 7월

IV

위탁개요

1 시설현황

- 시설명 : (가칭)간석1동 아이함께자람터(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 소재지 : 간석동 353-4번지(간석1동 복합청사 3층)
- 규모 : 98㎡(활동실, 사무공간, 조리공간 등)
- 정원 : 29명 (아동 1인당 3.3㎡이상)
- 종사자수 : 3명(센터장1명, 시간제돌봄교사 2명)
- 주요사업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제공

【 센터 운영 개요 】

- ▶ 이용대상 : 6세 ~ 12세(초등학생)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 운영시간 : 기본 운영시간 1일 8시간 이상, 월 ~ 금
 - 표준서비스 제공시간 : (학기중) 14:00 ~ 20:00, (방학중) 09:00 ~ 18:00
 - ※ 종사자 근무시간 : 1일 최대 8시간(휴게시간 제외)
- ▶ 운영내용 : 정기돌봄(일정기간이 정해진 돌봄), 일시돌봄(긴급사유 시 돌봄)
 - 돌봄프로그램 운영, 출결관리, 숙제지도, 휴식, 특기적성, 급·간식 등
- ▶ 이 용 료 : 수납한도액 월 100천원 이내(프로그램활동비, 현장학습비, 간식비 등)

○ 개소예정일 : 2024. 11월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 인건비 : 센터장 월3,166천원, 시간제돌봄교사(2명) 월1,470천원(국50:시25:구25)
 - 운영비 : 월 1,000천원(국50:시25:구25)
 - 운영비(자체) : 월300천원(구100)
 - 종사자 처우개선비 : 개인별 호봉 및 근무시간 등에 따라 상이(시50:구50)
- 수익자부담 수입 : 아동 1인당 월 100천원 이내
- 후원금, 전입금 등

②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2024.11.1.~2029.10.31. 예정)

③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선정

④ **위탁절차** ※ 모집 재공고시 일정 변경



V

세부추진계획

① 민간 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 (근 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시 기)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4. 4. 16. ~ 4. 23.)

②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붙임1】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2024. 4. 25.(목) ~ 5. 15.(수) (20일간)
- (접수기간) 2024. 5. 16.(목) ~ 5. 20.(월) (3일간)
- (접수장소) 남동구 평생학습관 4층 아동복지과 아이돌봄팀
-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
 - ※ 단독 신청 시 1회 재공고하며, 재공고에도 1개 법인이 신청할 경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단, 심의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 다수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할 경우에도 재공고함.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등기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모집결과 신청기관 없을 시 신청자격을 수도권으로 확대 예정

※ 법령 위반으로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시설 위탁 취소·해지 법인 신청 불가

○ (종사자의 자격)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별표1의2]에 따른 종사자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센 터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봄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 및 심의

- (구성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위원회 구성) 6인(위원장 포함)

구 분		인 원	선 정 기 준	비 고
계		6명		
위 원 장	공 무 원	1명	복지국장	당연직
위 원	공 무 원	1명	아동복지과장	당연직
	아동복지전문가	4명	사회복지시설장 및 민간 전문가	위촉직

- ※ 간사 : 1명(아이돌봄팀장)
- ※ 수탁 신청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 심의위원 추천 의뢰(비공개)
 - 추천의뢰 : 아동복지단체, 아동복지 전문가 등 심사위원 추천의뢰
 - 추천기한 : 2024. 5월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별도 계획 수립
 - 일 시 : 2024. 6월 중 (일정 추후협의 결정)
 - 심의내용 : 심의기준(안) 결정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심의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설명에 따라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 평가
 - 선정항목 및 비율(안)

구 분	계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 연계	운영의지
배 점	100점	10점	10점	50점	10점	20점

- ※ 세부심사기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심의기준별 항목 간 배점조정이 있을 수 있음
- ※ 감점(최대5점) : 비위사실(행정처분) 있을 경우

4 선정결과 안내 및 위탁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위탁계약 체결 : 2024. 6월중 【붙임3】

VI

향후일정(안)

- 민간위탁 의회 보고 : 2024. 4월중
- 위탁체 모집공고 및 접수 : 2024. 4. 25.(목) ~ 5. 20.(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4. 6월중
- 위탁운영 협약체결 : 2024. 6월중
- 위탁 개시 : 2024. 11월 예정

[참고자료2]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을 위탁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4. .

남 동 구 청 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센 터 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종사자	개소 예정일
(가칭)간석1동 아이함께자람터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간석동 353-4번지 (간석1동 복합청사 3층)	98㎡	29명	3명	2024.11월

※ 종사자 : 센터장 1명(상근직), 시간제 돌봄교사 2명(1인 4시간 근무)

2.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2024. 11. 1. ~ 2029. 10. 31. 예정)

3. 위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운영 및 관리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정기·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아동 모집 및 돌봄 상담, 관련 정보 제공
- 돌봄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간식 제공
- 종사자 채용·관리 및 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관리
- 그 밖의 돌봄서비스 지원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등

【 센터 운영 개요 】

- ▶ 이용대상 : 6세 ~ 12세(초등학생)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 운영시간 : 기본 운영시간 1일 8시간 이상, 월 ~ 금
 - 표준서비스 제공시간 : (학기중) 14:00 ~ 20:00, (방학중) 09:00 ~ 18:00
 - ※ 종사자 근무시간 1일 최대시간 8시간(휴게시간 제외)
- ▶ 운영내용 : 정기돌봄(일정기간이 정해진 돌봄), 일시돌봄(긴급사유 시 돌봄)
 - 돌봄프로그램 운영, 출결관리, 숙제지도, 휴식, 특기적성, 급·간식 등
- ▶ 이 용 료 : 수납한도액 월 100천원 이내(프로그램활동비, 현장학습비, 간식비 등)

4. 운영재원(2024년 기준)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및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에 따름

- 정부지원 보조금
 - 인건비 : 센터장 월3,166천원, 시간제돌봄교사(2명) 월1,470천원(국50:시25:구25)
 - 운영비 : 월 1,000천원(국50:시25:구25)
 - 운영비(자체) : 월300천원(구100)
 - 종사자 처우개선비 : 개인별 호봉 및 근무시간 등에 따라 상이(시50:구50)
- 수익자부담 수입 : 아동 1인당 월 100천원 이내
- 후원금, 전입금 등

5. 위탁운영조건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등 관련 법령·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계약서에 의함
- 인천시와 남동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가 자부담하여 운영하여야 함
-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 전액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남동구다함께돌봄센터 시설 공간 및 장비를 타 목적으로 사용금지
(영리추구, 정치 및 특정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개소 전까지 개소 및 운영 준비에 참여하여야 함

6. 위탁법인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소재하고 있거나 등기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7. 신청자격 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또는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8. 센터장 채용(선정된 위탁법인에서 시행)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센터장의 자격 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별표1의2])

직종별	자 격 기 준
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4. 4. 25.(금) ~ 5. 15.(수) (20일간)
- 접수기간 : 2024. 5. 16.(목) ~ 5. 20.(월) 18:00까지(3일간)
- 접수장소 : 남동구청 아동복지과 아이돌봄팀(남동구 평생학습관 4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방문접수만 가능

※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출서류(원본 1부, 사본 9부)
 - 가. 신청서(소정양식) : 10부
 - 나.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10부
 - 다. 법인정관 : 10부
 - 라. 법인일반현황 : 10부

- 마. 법인재산현황 : 10부
- 바. 사업실적 및 법인결산서(2021년 ~ 2023년) : 10부
- 사. 연도별 자부담출연계획서 : 10부
- 아. 자부담 재정능력 확보 증명서류(법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 10부
- 자. 시설운영·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서 : 10부
- 차. 조직(기구표), 종사자 확보계획 : 10부
- 카. 법인대표 이력서 : 10부
- 타.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통보서 사본 (지도·감독부서, 감사부서) : 10부
- 파.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료 : 10부
- ※ 위 순서(가~하)에 따라 1권으로 제본(A4규격, 페이지번호 부여) 10부 제출
- ※ 신청서 및 입증서류는 관련기관의 증명서 원본으로 1부씩 제출
-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회의 시 발표할 자료(ppt 및 요약본)는 신청서 접수 시 별도 제출(전자제출)

10. 심사 및 선정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공신력(10점) : 설립목적, 목적사업
 - 재정능력(10점) : 자산 보유현황, 예산편성 적정성
 - 사업수행능력(50점) : 사회복지시설 운영경력, 시설 운영계획
 - 지역사회연계(10점) : 지역사회네트워크 및 특수성 반영
 - 운영의지(20점) : 아이돌봄에 대한 이해도, 운영 의지
 - 비위사실 여부 : 행정고발, 행정처분 여부 확인 후 있을시 감점(최대5점) 처리
- ※ 항목별 배점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
- 신청법인별 사업계획을 10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
 - ※ 신청법인의 사업계획 발표 일시는 별도 통보 예정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해 계산한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 가운데 최고 득점자 순 (소수점 두자릿수까지 계산)
 - ※ 모집결과 1개 기관 신청 시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단축함
 -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인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 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11. 선정결과 통보

- 통보일 : 심사당일
- 방 법 : 남동구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된 법인에 개별통지

12. 협약체결

- 기 한 : 2024. 6월 한
- 선정된 법인이 협약체결 기한 내 체결하지 않을 시 차순위자와 협약 체결

13.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변경·추가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선정을 취소함
 - 현장 설명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전에 신청안내문과 위탁시설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람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서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협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취소와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 할 수 있음
 - 공모와 관련된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구의 해석에 따름
 - 선정된 법인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함
 - 신청서식은 남동구청홈페이지(www.namdong.go.kr)의 [바탕화면]-[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아동복지과 (☎032-453-8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참고자료3]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20
----------	------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일부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나이 개념을 정비하여 미래의 주인인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영유아의 나이를 영유아보육법에 맞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개정 : 안 제2조제2호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영유아보육법」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6세 미만의”를 “7세 이하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영유아”란 <u>6세 미만의</u>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7세 이하의</u> ----- -----. 3.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복지국 보육정책과장 김 미 라

[참고자료]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시행일: 2024. 2. 9.]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21
----------	------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24년 하반기 위탁종료 및 신규 공급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6개소)
- 위탁시설

(2024. 3. 11. 기준)

어린이집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현원)	설치(개원)일	위탁기간 (예정)
돌고래	청능대로715번길 24, 관리동 (논현1동,등대마을논현주공14단지)	196.74	39 (27)	2006.09.01.	2024.09.01. ~ 2029.08.31.
향기 보듬이 나눔이	논현고잔로 26 (논현고잔동)	500.57	88 (63)	2013.04.12.	2024.09.05. ~ 2029.09.04.
은행나무	논현로 45, 관리동 (논현2동, 논현휴먼시아하늘마을)	207.01	34 (27)	2008.10.01.	2024.10.01. ~ 2029.09.30.
호구포	은봉로166번길 27, 관리동 (논현2동,범마을휴먼시아)	162	34 (26)	2008.10.01.	2024.10.01. ~ 2029.09.30.
논현솔내	포구로 40, 관리동 (논현1동, 논현푸르지오 더퍼스트)	290.81	34 (34)	2019.11.01.	2024.11.01. ~ 2029.10.31.
서창 설래숲	서창남순환로 140, 관리동 (서창2동,더포레스트)	409.59	59 (49)	2019.12.30.	2024.12.29. ~ 2029.12.28.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와 교육
 -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 관리
 - 어린이집 운영(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관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육사업
- 소요예산 : 16,027,194천원(5년간)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위치도 등

돌고래		
향기 보듬이 나눔이		
은행나무		
호구포		

논현솔내		
서창 설래숲		

□ 참고 자료

- 참고1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 1부.
- 참고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1부.
- 참고3 : 관련법령(발췌)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6개소)에 따른 인건비, 운영지원비, 보육료 등 지원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4년 보육사업안내
 - 인건비 및 보육료는 연간 인상률(3%) 적용 추산
 - 운영지원비는 2024년도 지원기준 반영
- 비용추계의 기간 : 2024년 ~ 2028년
- 비용추계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운영지원비, 보육료 등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4년 ~ 2028년(5년)
- 발생비용 : 16,027,194천원 (국51, 시37, 구12)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14,045,709천원, 구비 1,981,425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복지국 보육정책과장 김 미 라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2,668,177	2,736,577	2,807,028	2,879,592	2,954,335	14,045,709	
국시비보조금		2,668,177	2,736,577	2,807,028	2,879,592	2,954,335	14,045,709	
세 출		3,050,081	3,125,522	3,203,098	3,283,062	3,365,430	16,027,19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3,050,081	3,125,522	3,203,098	3,283,062	3,365,430	16,027,194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668,177	2,736,577	2,807,028	2,879,592	2,954,335	14,045,709
	보 조 금	국비	1,550,686	1,593,715	1,638,035	1,683,684	1,730,703	8,196,823
		시비	1,117,491	1,142,862	1,168,993	1,195,908	1,223,632	5,848,886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381,904	388,885	396,070	402,438	411,095	1,981,425
	구 비		381,904	388,885	396,070	402,438	411,095	1,981,425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액 산정
-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현재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직위별 평균 호봉 기준으로 승급에 따른
인상률(3%) 적용 추산

[참고자료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안)

- ◆ 2024년 하반기 위탁종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II

추진방향

- 공개경쟁 참여기회 확대로 양질의 위탁체 선정
- 합리적인 선정 기준 및 선정 과정의 객관적 절차 이행으로 최적의 위탁 운영체 선정
-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III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개요

- 위탁대상시설 : 6개소

(2024. 3. 11. 기준)

명칭	소재지	규모	아동현황		위탁현황		비고
			정원	현원	위탁체	위탁기간	
돌고래	청능대로715번길 24, 관리동 (논현1동, 등대마을논현주공14단지)	196.74	39	27	홍성희	2019.09.01. ~ 2024.08.31.	

명칭	소재지	규모	아동현황		위탁현황		비고
			정원	현원	위탁체	위탁기간	
향기 보듬이 나눔이	논현고잔로 26 (논현고잔동)	500.57	88	63	황선희	2019.09.05. ~ 2024.09.04.	
은행나무	논현로 45, 관리동 (논현2동, 논현휴먼시아하늘마을)	207.01	34	27	민경자	2019.10.01. ~ 2024.09.30.	
호구포	은봉로166번길 27, 관리동 (논현2동, 범마을휴먼시아)	162	34	26	이교선	2019.10.01. ~ 2024.09.30.	
논현솔내	포구로 40, 관리동 (논현1동, 논현푸르지오 더퍼스트)	290.81	34	34	김지연	2019.11.01. ~ 2024.10.31.	
서창 설래숲	서창남순환로 140, 관리동 (서창2동, 더포레스트)	409.59	59	49	임은영	2019.12.29. ~ 2024.12.28.	

○ 위탁(예정)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돌 고 래 : '24. 09. 01. ~ '29. 08. 31.
- 향기보듬이나눔이 : '24. 09. 05. ~ '29. 09. 04.
- 은행나무 : '24. 10. 01. ~ '29. 09. 30.
- 호 구 포 : '24. 10. 01. ~ '29. 09. 30.
- 논 현 솔 내 : '24. 11. 01. ~ '29. 10. 31.
- 서 창 설 래 숲 : '24. 12. 29. ~ '29. 12. 28.

○ 위탁체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체 선정 :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IV

세부 추진계획

위탁체 공개모집

1.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4. 6월 중 (20일 이상)
- 공고내용 : 【붙임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참조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6월 중 (7일 이상)
- 접수방법 : 신청인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제출서류 : 【붙임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참조

3. 위탁체 신청자격

공통사항

-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가.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 사업을하기로 의결한 경우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나.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4. 신청 제외대상

※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 단, 고용된 원장 및 위·수탁 받은 원장은 신청 가능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위수탁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 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위탁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위탁체의 관리·책임하에 발생한 미납대금 등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당해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위탁체 선정 심사

1. 위탁체 선정 심사원칙 및 기준

- 심사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보건복지부)」을 준용하되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심사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
- 심사방법은 집합심사로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 실시

※ 【붙임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참조

심 사 항 목	배 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보육사업계획, 안전관리능력, 운영관리 및 평가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4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평가(인증)제 결과, 아동복지업무 경력, 공모사업 실적, 운영의지 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위탁체의 공신력 (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재정능력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계	100

2.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체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위탁체 선정 결과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하며,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가능함

V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동의절차 이행: '24. 4월
- 위탁체 모집공고 및 접수 : '24. 6월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 '24. 8월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위탁증서 수여 : '24. 8월

[참고자료2]

남동구 공고 제2024 - 호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남동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2024. 3. 11. 기준)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현원)	인가일	비고
돌고래	청능대로715번길 24, 관리동 (논현1동,등대마을논현주공14단지)	196.74	39 (27)	2006.09.01.	
향기보듬이나눔이	논현고잔로 26 (논현고잔동)	500.57	88 (63)	2013.04.12.	
은행나무	논현로 45, 관리동 (논현2동, 논현휴먼시아하늘마을)	207.01	34 (27)	2008.10.01.	
호구포	은봉로166번길 27, 관리동 (논현2동,범마을휴먼시아)	162	34 (26)	2008.10.01.	
논현솔내	포구로 40, 관리동 (논현1동, 논현푸르지오 더퍼스트)	290.81	34 (34)	2019.11.01.	
서창설래숲	서창남순환로 140, 관리동 (서창2동,더포레스트)	409.59	59 (49)	2019.12.30.	

2. 위탁 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 돌 고 래 : '24. 09. 01. ~ '29. 08. 31.
- 향기보듬이나눔이 : '24. 09. 05. ~ '29. 09. 04.
- 은 행 나 무 : '24. 10. 01. ~ '29. 09. 30.
- 호 구 포 : '24. 10. 01. ~ '29. 09. 30.
- 논 현 솔 내 : '24. 11. 01. ~ '29. 10. 31.
- 서 창 설 래 숲 : '24. 12. 29. ~ '29. 12. 28.

※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접수 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4. 6. 3. ~ 2024. 6. 24.
- 접수기간 : 2024. 6. 18. ~ 2024. 6. 24.
- 접수장소 : 남동구청 6층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신청인 방문 접수(신분증, 원장자격증 원본 지참)
 - 우편·인터넷·대리 제출 불가 / 법인·단체의 경우 위임장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총 15부 (원본 1부, 사본 14부)
 -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에 나열한 순
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 PPT 설명자료(USB 제출) : 위탁신청 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약 5분 분량)

4. 신청 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 및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나. 법인 · 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 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다.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5. 신청 제외대상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단, 고용된 원장 및 위수탁받은 원장은 신청 가능)
- ※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위수탁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위탁체의 관리·책임하에 발생한 미납대금 등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절차를 추진하고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7. 위탁체 심의·선정 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10
■ 위탁체의 공신력(도덕적·법적)	10
■ 재정능력	5
계	100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보건복지부)」를 준용하되,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은 일부 조정 가능

8.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 신청·접수순으로 운영계획 등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조정 가능)
 -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법인 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운영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신청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 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위탁체 선정 결과는 공고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가능함

9. 위탁계약 체결

- 위탁체로 선정된 자(이하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남동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위탁체는 위탁운영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위탁기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위탁체가 부담한다.
- ※ 보험가입금액은 어린이집 연간 총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구가 별도 지정함
- 위탁체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시 위탁체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위탁운영 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 제출
 - 위탁운영 조건 등 관련 사항 미숙지 또는 제출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 통보)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함(※ 불참 시 발표 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추가, 보완 불가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체로 선정되더라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위탁체가 어린이집의 교직원(고용원장 포함)으로 재직 중인 경우 위탁개시 2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임해야 함
(※ 단, 현재 위탁대상 어린이집에서 재직 중인 경우 제외)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보육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름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032-453-58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3]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

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 · 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922
----------	------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동 법 개정으로 관련 법률 조항 삭제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제정 2020.07.03. 조례 제1707호)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남동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조례 폐지안으로 소요 비용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환경교통국 공원녹지과장 박 호 진

[참고자료]

□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2020.07.03 조례 제17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행위에 대한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등의 조성
·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1707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23
----------	------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제명 개정 : (제명)
-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목적 개정: (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신설 : (안 제2조)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개정 :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21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21조에 따라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어린이에게”를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로 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제1항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어린이 급식용”을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어린이 급식”을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으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중전의 제4조)제2항 중 “법”을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영 제12조의2제1항 각 호”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2항 중 “제4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신 설></u>	<u>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1. 2. (생략)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업무) ①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②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용

보급, 영양관리 4. (생 략) 5. 그 밖에 <u>어린이 급식</u>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u>제3조(지원 대상)</u> 1. ~ 3. (생 략) 4. 그 밖에 「<u>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u>급식소</u> <u><신 설></u> <u>제4조 (운영 및 위탁) ①·③ (생 략)</u> ② 구청장은 별 제21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u>영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u>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u>제5조(수탁자선정위원회) ①</u> 구청장은 <u>제4조제2항에</u> 따라 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u>위원회</u>”라	----- 4. (현행과 같음) 5. ----- <u>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u>----- ----- <u>제4조(지원 대상)</u> 1. ~ 3. (현행과 같음) 4. 「<u>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u>」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u>급식소</u> 5. 「<u>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u>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u> <u>제5조 (운영 및 위탁) ①·③ (현행과 같음)</u> ② -----<u>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u>----- -----「<u>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u>」 제12조의2----- -----. <u>제6조(수탁자선정위원회) ①</u> --- --- <u>제5조제2항</u>----- ----- -----
---	--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 략) <u>제6조</u>(인력 등) ① · ③ (생 략)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르고, <u>제4조제2항</u>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제7조 ~ 제9조</u>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7조</u>(인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② ----- ----- ----- ----- ----- <u>제5조제2항</u>----- ----- ----- -----. <u>제8조 ~ 제10조</u>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환경교통국 식품위생과장 심 미 향

[참고자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이하 “식생활 안전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5.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6.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을 말한다.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

소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924
----------	------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으로 구민의 건강한 삶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제2조)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 : (안 제3조)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 : (안 제4조)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안 제5조)
- 지역건강협의체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제13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남동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며 스스로 지역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 자율조직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남동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
5.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건강협의체,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구성·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최소 5명 이상 배치하며, 센터의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고,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

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동구보건소장
2.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부서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지원) ① 협의체 수당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위치 및 관할 구역(제3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 구역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1번길 18	간석1·2·3·4동 만수2·3동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99, 2층일부, 3층	장수서창동 서창2동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
5.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맞는 지역특화 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건강협의체,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구성·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관할 지역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최소 5명 이상 배치하며,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고,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나. 비용발생 요인 :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1) 남동구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기설치되었으므로 본조례 제정으로 인해 새로 추가되는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만 비용추계한다.
- (2)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가 소요되며 정규직 제외한 인건비가 매년 2%씩 인상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 결과 : 615,526천원

(1)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인건비(정규직 제외)는 501,146천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54,000천원, 자산취득비는 17,380천원, 일반운영비는 43,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표]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비 : 2024~2028년 [단위:천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총 사업비(a+b)	137,879	116,425	118,390	120,394	122,438	615,526
증액분(a)		1,926	1,965	2,004	2,044	7,939
현재 편성액(b)	137,879	114,499	116,425	118,390	120,394	607,587

다. 재원조달 방안

(1) 615,526천원(국비101,540천원 / 시비57,869천원 / 구비456,117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불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남동구보건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 현 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일반회계								
세 출		137,879	116,425	118,390	120,394	122,438	615,526	
인건비(정규직 제외)		96,299	98,225	100,190	102,194	104,238	501,146	
프로그램 운영비		10,800	10,800	10,800	10,800	10,800	54,000	
자산취득비(장비등)		17,380					17,380	
일반운영비		13,400	7,400	7,400	7,400	7,400	43,000	
재원 조달		137,879	116,425	118,390	120,394	122,438	615,526	
의존 재원	소 계		30,814	31,336	31,871	32,416	32,972	159,409
	보조금	국비	19,596	19,944	20,301	20,664	21,035	101,540
		시비	11,218	11,392	11,570	11,752	11,937	57,869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07,065	85,089	86,519	87,978	89,466	456,117
	지방세		107,065	85,089	86,519	87,978	89,466	456,117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 및 임용자격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기간·평가 및 그 결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710호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4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안전부의 인감증명제도 혁신방안에 따라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정비하고 일부 별지 서식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서식 정비(문구삭제)
 - 안 제17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제도 혁신방안에 따른 인감증명 요구 내용을 삭제함
- 별지 서식 정비(일부 수정)
 - 안 제3조 관련 별지 제2-1호, 제2-2호서식 및 안 제9조 관련 별지 제3호,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안전총괄과 / ☎ 453-2336 FAX 453-2319)

-남동구 홈페이지(<https://www.namdong.go.kr/main/news/legislation.jsp>)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3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제도 혁신방안에 따라 불필요한 인감 증명 요구 사무를 정비하고 일부 별지 서식의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식 정비(안 제3조 관련 별지 제2-1호, 제2-2호서식 및 안 제 9조 관련 별지 제3호, 제4호서식)
 - 일부 수정
- 서식 정비(안 제17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제도 혁신방안에 따른 인감증명 요구 내용을 삭제함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2-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자치단체]

1. 추진 배경

- 1914년 도입 이래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및 방문 발급에 따른 국민불편 발생

* ('23.12. 기준) 4,142만명 인감 등록, 연간 인감증명서 2,984만통 발급 : 부동산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

- ⇒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을 '25년까지 정비('24. 1. 30. 민생토론회)

— < 대통령 지시사항('24. 2. 6. 국무회의) > —

- ▶ 각 부처에서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 제7차 민생토론회 자료

- (인감증명제도 혁신) 인감증명 요구사무의 불필요한 사무 정비 및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 제공 추진
 - 불필요한 인감증명사무 정비 (2,145건 / 2,608건, 전체 82%)

— < 요구사무 정비기준 > —

- ▶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는 원칙적 폐지(존치 필요시 근거규정 마련)
- ▶ 기 폐지된 인감증명 요구사무와 동일·유사한 사무는 원칙적 폐지
- ▶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으로 대체
- ▶ 인감증명이 불가피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병행가능토록 근거규정 정비

- 관행적 요구사무(295건) 조속 정비(~'24. 12., 11%)
- 근거 규정이 있는 요구사무 단계적 정비(~'25. 6.)

□ 자연재해대책법

-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가입 신청서 <개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혈액형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자격증 또는 기능			
재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동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 신청서 <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조,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 (인)

○○○동장 귀하

[불 입]

가입 희망 회원 명부

[단체명]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자격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부	혈액형	비고
1							
2							
3							
4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단계별 방재활동에 필요한 연락체계 마련 등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시 보유, 탈퇴시 즉시 파기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개인정보가 없을 시 수당 입금이 불편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시 수당 입금이 불편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인)

○○○동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

성 명	(인)또는(서명)		생년월일	
활동 내용	사 유	※예) ○○태풍, 집중호우, 설해, 한파, 강풍, 지진, 폭염		
	방 법	※예)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시간)		
	장 소	※예) ○○동_____번지 일원, ○○회관 주변 등		
	내 용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차량통제 00시간, 주민대피유도 00시간, 제설함 점검 00시간, 제설작업 00시간, 그늘막 점검 00시간, 캠페인 00시간, 한파쉼터 점검 00시간, 배수구 토사(잡초)제거 00시간, 응급조치 및 복구 00시간 등		
활동 사진	※예) 활동모습이 나오게 촬영, 사진 첨부가 힘들 경우 담당동 공무원에게 전송하여 첨부요망			
건의 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확인자	직위 _____동 담당자 성 명 (인)또는(서명)			
본인은 남동구 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생년월일	활 동 상 황			계좌번호
			횃 수	시 간	금 액	
1						
2						
3						
⋮						

※ 횃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별지 제7호 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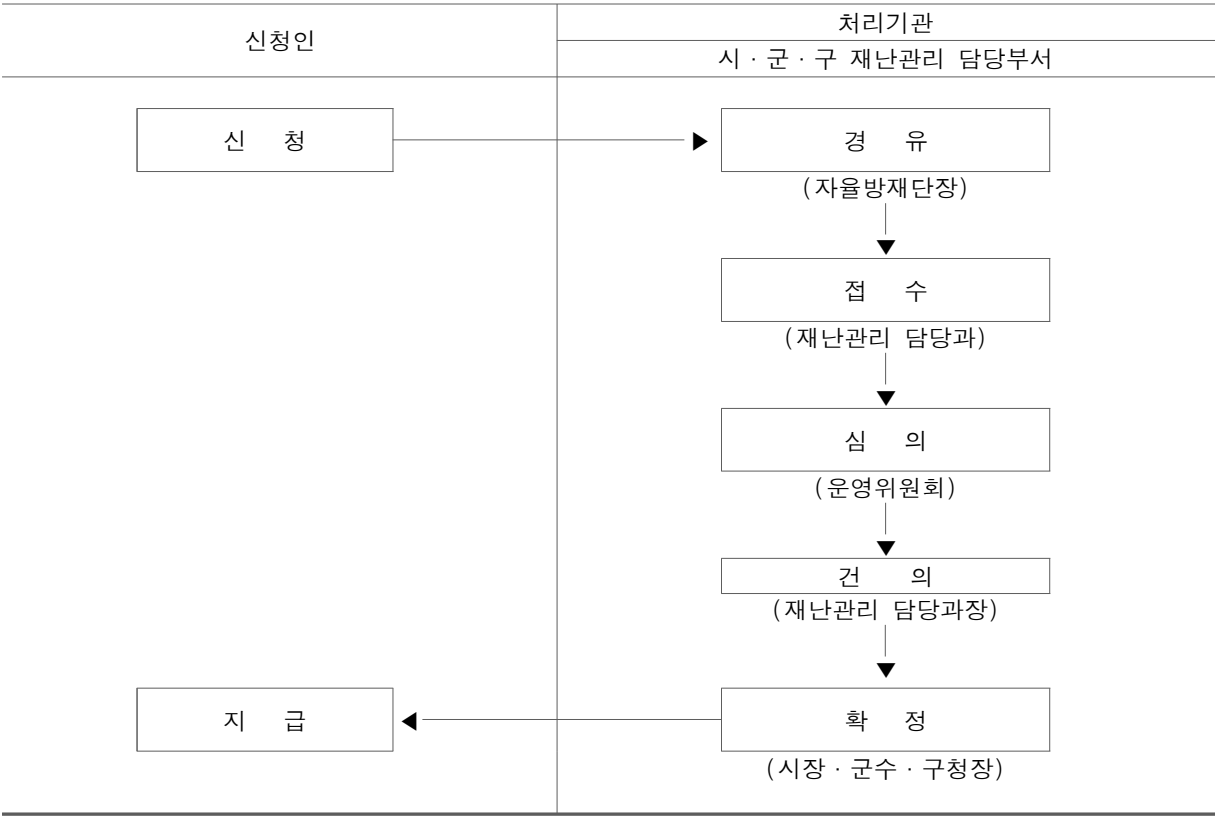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4-13호

남동구의회 회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의회 회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의원배지 모형 및 규격을 최신화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원배지 규격 등(안 제2조제3항)

나. 배지모형도(별표3)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4. ~ 4. 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26,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규칙안 : 별첨

※ 이 규칙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회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철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26
----------	------

발의연월일 : 2024년 4월 4일

발 의 자 : 이철상·오용환 의원

찬 성 자 : 김재남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의원배지 모형 및 규격을 최신화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원배지 규격 등(안 제2조제3항)
- 배지모형도(별표3)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52조

남동구의회 규칙 제 호

남동구의회 회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남동구의회 회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3항 중 “배지는 회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를 “배지의”로, “색상”을
“색채”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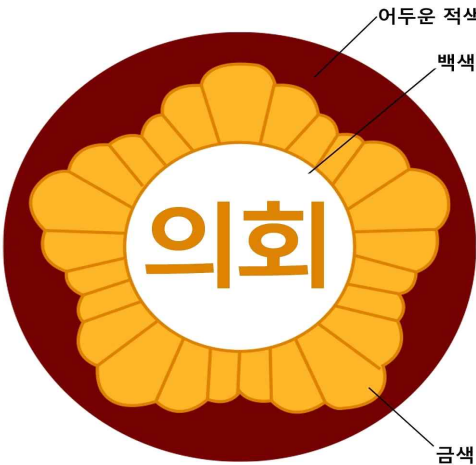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배 지 모 형 도(제2조제3항 관련)

가. 모형 및 색채



나. 규격

모 형 내 용	규 격
도 판	1.6cm
무 궁 화 형	1.35cm
의 회 글 자	가로0.62cm / 세로0.4cm

다. 재료 및 방법

은으로 하되 “가”의 색채 중 “금색”과 “도판” 테두리는 금으로 도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규격) ①·② (생략) ③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다는 <u>배지는 회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모형 및 색상, 규격, 재료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u>	제2조(규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배지의</u> ----- ----- <u>색채</u> ----- -----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유 재 필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4-14호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시 환수 조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1조제3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4. ~ 4. 9.(5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41,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25
----------	------

발의연월일 : 2024년 4월 4일

발 의 자 : 전용호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시 환수 조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안 제11조제3항)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은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 ② (생략) ③ <u>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은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u>	제11조(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은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u>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유 재 필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4-15호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퇴직 등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차별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차별행위의 예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불리한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4. ~ 4. 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박정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27
----------	------

발의년월일 : 2024년 4월 4일
발 의 자 : 박정하 의원
찬 성 자 : 이연주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퇴직 등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차별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차별행위의 예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불리한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조의3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전보, 교육·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와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구의 출자·출연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8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유 금 순

[참고자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 채용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생략
2. 생략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생략
5. 생략
6. 생략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4-16호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사회의 주도적인 소통매체가 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해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주요사항의 자문(안 제5조)
- 재정지원(안 제6조)
- 업무의 위탁(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4. ~ 4. 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 (이연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28
----------	------

발의년월일 : 2024년 4월 4일
발 의 자 : 이연주·이정순 의원
찬 성 자 : 박정하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사회의 주도적인 소통매체가 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해석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주요사항의 자문(안 제5조)
- 재정지원(안 제6조)
- 업무의 위탁(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평생교육법」 제39조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조례현황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구민들의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남동구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관할 교육청, 관내 교육기관 및 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6조(재정지원)
- 제7조(업무의 위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제6조(재정지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제7조(업무의 위탁):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작성자 : 행정국 평생교육과장 이 은 미

[참고자료]

□ 평생교육법

-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조례현황

구분	자치단체명	비고
광역 (3)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3)	서울 강남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성군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4-17호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도시화 가속화로 농지 및 농업활동이 축소되고 있으나 농업활동을 통한 치유적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음
- 도시농업과 더불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4조)
-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안 제5조)
- 전문가의 자문(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4. ~ 4. 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29
----------	------

발의년월일 : 2024년 4월 4일
 발 의 자 : 김은숙 의원
 찬 성 자 : 전용호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도시화 가속화로 농지 및 농업활동이 축소되고 있으나 농업활동을 통한 치유적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음
- 도시농업과 더불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4조)
-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안 제5조)
- 전문가의 자문(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지역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4. 치유농업 서비스의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 및 체험
5. 치유농업 관련 산·학·연·관 협력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미첨부함

작성자 : 재정경제국 농축수산과장 김 은 실

[참고자료]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치유농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